



정 교 교 육 통 신

- 교육목표 -
도덕인, 자주인
창의인, 건강인

학생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의견 수렴

안녕하십니까?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우리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학생생활인권규정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**[알림마당]-[공지사항]-[190. 정교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]**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
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,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**4월 12일(수)까지**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7일

정 교 초 등 학 교 장

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에 대한 의견

관련 조항	의견	비고
제 ()조		
제 ()조		

학부모 성명: (서명)

학 생 성명: (서명)

정교초등학교장 귀하